

## 심리상담서비스 국가 자격 관리 방안 제언: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신윤정<sup>1</sup> · 이지연<sup>2\*</sup>

<sup>1</sup>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sup>2</sup>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최근 보건복지부의 주도하에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수요자 중심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국가 자격 제도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들은 모두 그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에 있어서 기준과 평가 방식이 다양하여, 심리상담 전문가의 기본 구성 요건 및 전문성 평가 기준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상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논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탐색하는 데 주요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심리서비스 법률 1안의 토대가 된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에서 소개된 미국의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종학력에 대한 기준제시, 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조건인 대학원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대학원 과정에서의 단계적 수련체계의 구축과 교육 기관과 수련기관의 협업을 통한 수련의 질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목적이 해외사례를 답습하고자 함이 아니며,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상담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담의 고유한 정체성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제화 방안에도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논하였다.

주요어 : 심리서비스법안, 심리사면허, 인증제도, 자격관리, 심리상담전문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지연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부교수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 Tel: 02-2173-3086 / E-mail: Jiyeon.lee@hufs.ac.kr

## 서론

지난 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으로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이 수립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1). 이는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확대할 실효성 있는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 등의 주요 관계 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주요 학·협회 회장 등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회의를 거쳐 논의한 결과이다(보건복지부, 2020). 즉, 수요자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모든 연령대의 다양한 배경의 일반 사람들부터 중증정신질환자까지 모든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체계화와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전문가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보건복지부, 한국심리학회, 2020)가 공개되었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중 주요 영역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국내의 유관 학문 분야 내에서 누가 제공해야 하는가, 그리고 심리상담 전문가의 기본 요건 및 평가와 질 관리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를 토대로 제안된 심리서비스 법률 1안은 심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서 제 2장 7조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학부와 석사학위, 혹은 석사와 박사학위 취득자를 묶어서 제시하면서 학부에서의 전공을 심리학으로 제한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학문 분야를 심리학으로 특정한 반면, 최종 학위 기준은 석사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기준이 불명

확하다. 또한, 실무 수련에 대한 내용과 기간 등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질 관리에 핵심적인 실무 수련과 자격 검정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심리사의 업무를 살펴보면, 제 2장 12조에서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등으로 폭넓게 제시되어 있다. 즉, 현재의 법안은 학부 혹은 석사부터 심리학 전공자만 기준이 모호한 실무경험을 이수한 경우 심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들이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이해가 된다. 따라서, 현재 제안된 심리서비스 법률 제 1안이 과연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심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서, 적절한 학문분야와 핵심역량의 정의, 교육과정의 기준과 학위요건이 제시되었는가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특정 학문 분야나 학위요건보다 전문성을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수련 및 자격 검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제 2장 11조에서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은 한국심리학회 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심리상담을 비롯 심리서비스 분야의 연구와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국내의 여러 상담 학회의 전문성은 배제되고 있다.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의 취지가 범정부 차원에서 심리상담을 포함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전문가 풀 확보 및 관리라는 점에서 볼 때, 미국의 여러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면허 중 미국의 심리사(Licensed Psychologist: LP) 면허만을 소개하였고, 그 정보 또한 정확하지 않아 미국 내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전문집단과 면허 제도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미국의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로서, 전문상담사(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LPC)와 같이 석사 수준의 학력 기준을 갖추고 취

득할 수 있는 면허와 심리사(LP)와 같이 박사 수준의 학력 기준을 갖추고 취득할 수 있는 면허가 모두 존재한다. 취득기준, 즉 최소 학위요건 및 면허 발급 기관은 상이하나, 취득과정은 유사하다. 일례로, 전문상담사(LPC)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상담 및 관련 교육 인증위원회(The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CACREP) 인증을 받은 정신건강 상담 관련 전공 석사 프로그램 졸업이 요구되는 반면 심리사(LP) 면허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의 인증을 받은 임상, 상담, 학교 심리 전공 박사 프로그램 졸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석사급 전문상담사(LPC)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나 박사급 심리사(LP)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 모두 인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졸업 후 일정 시간의 수련경험과 수퍼비전을 받고, 표준화된 시험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내 여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 면허를 모두 소개하기보다, 최근 제안된 심리서비스법의 토대가 된 입법 연구(보건복지부, 한국심리학회, 2020)에서 주로 참조한 미국의 심리사(LP) 면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사(LP) 면허에 대한 구체적 소개와 더불어 이와 연결된 대학 내 인증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간략히 소개해봄으로써 한국에서 심리상담 전문영역이 법제화 과정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미국 심리사 면허 취득 과정과 요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 면허 중 하나인 미국의 심리사(LP)는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설계된 자격제도이다. 미국은 주별로 자격관리를 하고 있어, 심리사(LP)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미국심리학회(APA)에서 인증한 과정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학위 과정 중에 상담실습 및 미국심리학회(APA)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1년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 수련을 마치면 필기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박사 후 과정에서의 수련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별로 시행되는 윤리 시험이나 면접을 별도로 치루어야 한다.

심리사(LP) 면허 취득을 위한 학위 조건을 살펴보면 학부나 석사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미국심리학회(APA)에서 인증한 프로그램의 졸업 여부, 즉 최종학력이 중요하다. 이는 미국의 경우 심리사(LP) 양성의 첫 번째 단계를 대학원 학위과정, 즉 박사과정 프로그램이 담당하며, 이에 프로그램 별로 인증(Accreditation)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인증은 기본적으로 건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심리 분야 전공(health service psychology)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하는 분야를 의미하며 임상, 상담, 및 학교 심리를 아우른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다시 말해, 심리학 내 다양한 하위전공 안에서도 임상, 상담, 임상 및 상담 통합전공, 및 일부 학교 심리 전공을 하는 학생들만 이후 심리사(LP)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필수 교육 및 수련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이다(Office of Program Consultation and Accreditation, 2021).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핵심 목표는 전문성의 질 보장이다. 즉, 최종 학위과정인 박사 전공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국심리학회(APA) 산하 인증위원회가 국내의 교원양성기관 평가 등과 유사하게 정기적인 평가를 하는데 이는 정신건강 관련 서비

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나 수련생 뿐 아니라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해 명시된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수련과정에서 엄중성이 지켜졌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하여 학생들이 전공분야 고유의 지식과 역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신뢰롭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제도 운영의 핵심 목표는 대학원 프로그램이 윤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양성하여 서비스를 받은 개인들을 보호하는 첫번째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따라서, 인증받은 프로그램들은 모두 교과목 이수와 수련이 통합되어 운영된다. 즉, 교과과정 수업을 듣는 것과 수련과정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박사과정 중 최소 3년 이상의 전공 내 그리고 전공 밖 현장에서의 실습 수행이 수업의 차원에서 관리됨으로써 수련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학점 인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졸업을 위해서는 수련 과정을 반복하게끔 하여,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의 실무역량 기준을 갖춘 자가 최종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교과과정에는 영역별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전문영역 관련 역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간략히 소개해보자면, 연구, 윤리적 법적 기준, 개인차와 문화 다양성, 전문가로서의 가치, 태도 및 행동,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기술, 평가, 개입, 수퍼비전, 자문과 전문영역 간 혹은 학제 간 공통 기술 등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그에 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Commission on Accreditation, 2020). 따라서, 인증기관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는 평가 기준에는 이러한 전문 역량

들을 키울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수련 프로그램과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재학생 만족도 및 졸업생 환류에 대한 피드백도 포함된다.

인증받은 프로그램들은 인증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상담 실습을 제공하는 시설 및 운영에 있어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교육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으로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 실습실, 녹화·녹음시설, 실시간 수퍼비전이 가능한 장비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수와 학생들은 실습수업 시, 서로의 상담 수련 장면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내담자의 동의하에 세션을 녹화하여 녹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퍼비전을 받는다. 교육 프로그램 내 실습(on-site practicum)은 최소 1년간 이루어지며, 이때 실습 10시간 당 최소 1시간의 개인 수퍼비전 및 수업을 통한 집단 수퍼비전이 제공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내 실습수업을 마친 후, 학생들은 고급 실습수업을 수강해야 한다. 이는 외부기관에서 실습 경험을 하는 과정(off-site practicum)으로서, 외부 실습기관을 정한 학생들은 외부기관에서 최소 1년 동안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경험을 쌓고, 약 10시간당 1시간의 개인 수퍼비전을 필수적으로 받을 뿐 아니라, 고급 실습수업에서 교수로부터도 수퍼비전을 받게 된다. 이때, 교수는 학생의 외부실습기관의 센터장 및 수퍼바이저와 만나 학생 지도를 함께 논의하며, 학생의 수련시간 또한 수퍼바이저 및 기관장 그리고 교수의 검증을 거쳐 매 학기 기록된다(Purdue University Graduate Program in Counseling Psychology, 2020).

박사과정의 마지막 일 년 동안은 전일제 인턴쉽 수행을 해야 졸업요건이 충족된다. 이때, 미국심리학회(APA) 인증을 받은 인턴쉽 운영기관(accredited internship site)에서 실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턴쉽은 앞선 수련 경험과 달리 유급제로

운영이 되며, 인턴십 수련 과정도 매우 구체적인 기준(1년간 최소 2000시간 이상이나 주마다 상이)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 일주일에 4시간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든지, 총 수련 시간 중 몇 퍼센트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시간(direct hour) 이어야 하는지 등의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2020년 기준, 상담심리, 상담-임상, 상담-학교-임상, 혹은 상담-학교 연합(combined) 등을 포함하여 상담 박사과정 프로그램(Ph.D.와 Psy. D 모두 포함)으로 인증을 받은 박사과정 프로그램은 총 80개이다. 이 중 53개의 프로그램이 교육학과 혹은 사범대 안에 속해 있으며, 다른 프로그램들은 건강과학대학, 상담학과, 심리학과, 인문대학, 전문대학원 등에 나누어 분포되어 있다(Office of Program Consultation and Accreditation, 2021). 즉, 개별 학교마다 상담심리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내 조직이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교육학과, 심리학과 및 통계학과 내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기도 하는 등 학제 자체가 이슈가 되기보다는 인증된 프로그램에서 학위를 받았는지 여부가 면허 취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심리사(LP) 면허 취득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나 필요조건이다. 학위 과정 졸업만으로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지 않다. 최종적으로 심리사(LP)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박사 졸업 후 요구되는 수련 경험과 수퍼비전을 받고, 표준화된 시험 및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국내에서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을 제공하는 한국상담학회나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운영하는 자격 검정 및 취득과정과도 매우 유사하다. 단, 미국의 경우는 면허이기 때문에, 면허 소지자가 제공하는 심리상담서비스가 의료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Wampold, Lichtenberg, & Wachler, 2002). 이와 더불어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위반 시 학회에서의 제재에 더하여, 법적 제재(예: 비밀보장의 의무의 위반) 및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국내 사정과는 차이가 있다.

## 논 의

이러한 미국의 심리사(LP) 면허 취득과정을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함께 논의해 볼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수준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을 하는 자격에 대한 논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자격요건을 고려할 때, 법적인 보호와 더불어 활동 제재 및 자격 박탈 등 엄격한 규제도 함께 요구되는 대인 서비스(human service)를 제공하는 영역에 한해서만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부여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학문 분야 전체를 자격요건으로 넣기보다, 석사급이든 박사급이든 최종학력의 전공이 심리상담 서비스가 가능한 전공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그러한 특정 전공 프로그램에서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의 수련을 거치고 시험과 면접을 통과하여 국가 수준의 자격 혹은 면허 취득이 가능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최종 학위를 수여하는 상담, 임상, 학교 심리 등의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전공 교육 프로그램의 졸업이 자격증 혹은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필수조건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차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이론교육에서 기초 및 고급 실습까지 관리 감독하는 대학원 내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증받은 프

로그그램을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최소한 그 개인이 이론을 배우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었으며, 실습 수련을 통해 심리상담, 심리치료, 심리평가 등의 전문기술도 습득하였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최소한의 질 관리를 학위과정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필요성 및 국내 심리상담 전문가들의 상담교육 인증에 대한 의식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일련의 국내 연구결과들을(김인규, 2018; 김인규, 이미현, 정보인, 2013)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의 경우 심리사(LP) 면허를 포함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면허 취득시, 인증된 프로그램의 학위과정이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님을 고려할 때, 최종 학위 취득 후 일정 시간의 수련 경험, 전문적 필수 지식 확인을 위한 표준화된 시험, 및 윤리성 검증을 위한 면접 등의 면허 취득을 위한 충분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도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의 심리사(LP)면허 취득 기준처럼 학력 기준, 교과목 이수, 수련시간(수퍼바이저의 지도를 받은 시간 포함), 수련의 영역(개인, 집단상담, 심리평가 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민간 자격 검증 체계를 만들어 상담전문가를 양성하는 주요 학회들(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심리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주요 학회들의 자격증 제도 및 유관 교육 기관들의 교육 및 훈련이 국가가 요구하는 심리상담 서비스 전문가에 부합하는 수준인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러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넷째, 현재 정부의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은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이 궁극적 목표임을 고려할 때, 최종학력이 박사급인 미국의 심리사(LP) 면허 제도 외에 최종학력이 석사급인 전문상담사(LPC) 자격 제도를 참조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석사급 심리상담 서비스 전문가 양산의 필요성은 최근 미국 내에서 석사급 심리사(LP)를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미국은 국내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전문가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Washburn, 2019). 이는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서비스 위기 지역인 지방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다(Designated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s statistics, 2021). 실제 미국에서도 박사급보다 석사 수준의 상담전공 졸업자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 심리상담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 심리 석사전공생들이 전체 심리전공 석사 졸업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Brady-Amoon, & Keefe-Cooperman, 2017; Hughes & Diaz-Granados, 2018). 이에, 최근 미국심리학회(APA)에서도 석사급 심리사(LP)를 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현재 미국심리학회(APA) 인증 프로그램은 박사과정 중심이라 석사과정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Masters' accreditation work group)가 구성되었다(Commission on Accreditation, 2020). 이러한 움직임은 전문상담사(LPC)를 양성하기 위해 석사급의 수련을 인증하고 담당하는 상담 및 관련 교육 인증 위원회(CACREP)의 인증제도가 현재 임상심리전공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인증해주지 않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Hughes & Diza-Granados, 2018; Thompson, 2020). 추측할 수 있다시피, 미국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심리상담 영역이 심리학의 영역 인지 상담학의 영역인지, 전문 분야 중첩으로 인한 긴 논쟁과 긴장이 있어왔다(Brady-Amoon & Keefe-Cooperman, 2017; Mascari & Webber, 2013). 이에 외국의 직역 간의 갈등을 반면교사 삼아, 국내에서는 국가 자격으로 심리상담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심리서비스 자격 전문가 양성을 담당하는 유관 학문 분야의 학회들이 협력하여 공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면허를 취득하는 자격요건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제 간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학위 과정 내에서 어떤 수련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학부 교육 중심의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의 교육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융·복합 인재 양성에 주력하며 이에 부전공, 복수전공, 혹은 본인이 전공을 설계하는 경우까지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와 더불어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부 수준에서 다양한 학문 영역을 통합해서 배우고 지식을 쌓은 인재의 유입 또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의 최종학력에 대한 기준과 그 학위 과정 안에서 일정한 시간의 수련을 경험하게끔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인증을 받는 최종 학위과정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안에서도 수련의 최소기준은 엄격히 하더라도 전문성을 심화하고 싶은 분야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같은 상담이나 임상 심리 전공이라도 철학박사(Ph.D), 심리학 박사(Psy.D)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상담이나 임상심리를 전공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별로 교육자의 역할, 과학자 혹은 연구자로서의 역할, 혹은 실무자로서의 역할 등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역할이 다르며, 이에 따라 훈련받는 방식도 다양하다. 일반화하긴 어려우나 대체로 상담이든 임상 전공이든 철학박사(Ph.D)는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의 역할, 심리학 박사(Psy.D)는 실무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어떤 종류의 박사를 받든,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 졸업자라면 심리사(LP)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는 국내에서 심리상담, 심리치료, 심리평가 등을 담당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양성시 역할별 전문성을 고루 존중하고 관련 인력들을 양성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2025년까지 5개년도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하에서 일하는 심리서비스 전문가의 역할은 교육, 연구, 실무 등 다양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심리상담, 심리치료, 심리평가 전문 영역 안에서 교육, 연구, 실무 경험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조력해야 함을 염두에 두고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증제도와 법제화에 대한 논의에 있어, 현재 제안된 심리서비스법안 안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상담 분야의 고유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은 전통적으로 치료적, 예방적, 교육-발달적 역할을 지니며, 개인의 강점에 초점을 두고, 개인-환경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단기상담 및 진로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Gelso & Fretz, 2001).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차별방지 등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옹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DeBlaere et al., 2019). 이에, 이러한 심리상담의 전통적 역할과 특성뿐 아니라, 한국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고유의 역할을

포함하여 핵심 역량을 구체화하고 재정립하는 것이 인증제도 및 법제화 과정에 대한 논의에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에서 근거로 삼은 미국 심리사(LP) 사례에서 어떤 점을 국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주된 목적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심리사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는 참고하되, 국내의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전문가에 대한 국가 자격제도는 국내의 사회·경제·문화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서 그 교육과정, 자격체계와 수련과정을 정립하고 법제화해 나가야 한다. 최근 미국 상담심리학회에서도, 전 세계에서 미국의 모델을 따라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이를 학문의 식민지화(colonization)라고까지 칭하면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Nilsson, Wang, & Chung, 2019; Norsworthy, 2017), 개별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국의 면허 제도의 발전과정과 운영 현황은 국가마다 고유한 사회·문화 및 정치·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한국은 심리서비스 전문영역의 성장에 있어 고유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우선, 미국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면허 제도가 발전되어 왔다(Reaves, 2006). 그에 따라 법제화된 면허를 취득한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의료보험으로 처리되기 시작하였으며, 의료보험 처리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근거기반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Wampold et al., 2002). 이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성 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이어졌으며, 현재 미국 정부의 여러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

시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자연스럽게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유사직역 전문가들과 더불어 존중받고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Gelso & Fretz, 2001; Heppner et al., 2000; Wampold et al., 2002).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적 필요에 대해 민간 및 학회 차원에서 활발히 발빠르게 대응한 반면, 국가 차원에서 상담의 사회적 필요에 부응할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전문 자격에 대한 법제화 작업은 한발 늦은 상황이다(김영근 외, 2012; 김인규, 2018). 그로 인해, 미국과 달리 이미 민간 자격증이 수천 개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몇몇 학회 자격증들은 이미 수요자 중심의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환경 및 해당 전문 분야 안에서 공신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또한, 법제화 과정에서 석사급과 박사급 자격증 및 수련과정이 분리되어진 미국과 달리(Jackson & Scheel, 2013), 국내는 기존 주요 심리상담 관련 학회 자격증들이 석·박사를 구분짓기보다는 주로 석사학위 소지자들이 미국의 심리사(LP)에 준하는 1급 전문 심리상담 자격증을 취득해 왔음이 또 다른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의 경우 수많은 민간 자격증들이 생겨날 만큼 사회적 필요가 컸던 반면에, 심리상담이 다른 유사 분야(임상, 사회복지 등)와 차별화되는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보다, 심리상담 분야 내부에서 다양한 정체성들이 융합 혹은 통합되지 못한 채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정신건강 서비스 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중 하나인 국내의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심리상담의 고유성을 확립하는 것이 현 법안에 묻어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상담심리의 발전 과정에서 몇 번의 대표적인 학회 및 관련 부처간 협의회 개최를

통해 상담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 및 합의에 이르는 과정들이 선행되어왔다는 점도(Gelso & Fretz, 2001)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심리상담 관련 학회들이 함께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상담의 정체성과 고유성 확립을 공고히 하는 과정을 통하여, 현재 민간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관련 법제도 하에 명확히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현실화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1. 01. 14).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 김영근, 김현령, 이정인, 신재훈, 신동미, 이상민 (2012).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41-670.
-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75-493.
- 김인규, 이미현, 정보인 (2013). 한국형 상담교육 인증체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상담학연구*, 14(3), 1569-1585.
- 보건복지부 (2020.10.14).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2021-2025) 추진단 첫 기획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285](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285).
- 보건복지부, 한국심리학회 (2020). 심리서비스 입법연구.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03). Commission on Accreditation Policy. Retrieved from <https://www.apa.org/ed/accreditation/newsletter/2017/03>.
- Brady-Amoon, P., & Keefe-Cooperman, K. (2017).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y, and Professional Counseling: Shared Roo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Europe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 41-62.
- Commission on Accreditation (2020, 03). *Master's level accreditation: A status update from the Master's accreditation work group*. Retrieved from <https://www.apa.org/ed/accreditation/newsletter/2020/03/masters-accreditation>.
- DeBlaere, C., Singh, A. A., Wilcox, M. M., Cokley, K. O., Delgado-Romero, E. A., Scalse, D. A., & Shawahin, L. (2019). Social justice in counseling psychology: Then, now, and looking forward.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7(6), 938-962.
- Designated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s statistics. (2021). *Third quarter of fiscal year 2021 designated HPSA quarterly summary*. Retrieved from <https://data.hrsa.gov/Default/GenerateHPSAQuarterlyReport>.
- Gelso, C., & Fretz, B. (2001). *Counseling psychology* (2nd ed.). Fort Worth, TX: Harcourt College.
- Heppner, P. P., Casas, J. M., Carter, J., & Stone, G. L. (2000). The maturation of counseling psychology: Multifaceted perspectives, 1978-1998. In S. D. Brown & R. W. Lent (Eds.), *The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 3-19). New York: Wiley.
- Hughes, T. L., & Diaz-Granados, J. (2018). Master's summit: Quality assurance and accreditat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9(5-6), 306-310.
- Jackson, M. A., & Scheel, M. J. (2013). Quality of

- master's education: A concern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1(5), 669-699.
- Mascari, J. B., & Webber, J. (2013). CACREP accreditation: A solution to license portability and counselor identity problem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1(1), 15-25.
- Nilsson, J. E., Wang, L., & Chung, Y. B. (2019). Working Globally: Advancing International Competencies in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7(4), 566-577.
- Norsworthy, K. (2017). Mindful activism: Embracing the complexities of international border crossings. *American Psychologist*, 72(9), 1035-1043.
- Office of Program Consultation and Accreditation (2021). *APA-Accredited Programs*. Retrieved from <https://accreditation.apa.org/accredited-programs>.
- Purdue University Graduate Program in Counseling Psychology. (2020). *Student Handbook; Counseling Psychology Program*. <https://www.education.purdue.edu/wp-content/uploads/2016/08/purdue-counseling-psychology-handbook.pdf>.
- Reaves, R. P. (2006). The history of Licensure in Psychologist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n T. J. Vaughn (Ed.), *Psychology licensure and certification: what students need to know* (pp. 17-2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ompson, M. F. (2020). Subdoctoral practitioners in psychology: Implications for Master's-level Psychologist. *Practice Innovation*, 5(2), 105-113.
- Wampold, B. E., Lichtenberg, J. W., & Waeher, C. A. (2002). Principles of empirically supported intervention in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2), 197-217.
- Washburn, J. J. (2019). Master's level providers in health service psychology: An idea that has come and passed, and now must come again.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13(2), 92-99.

원고 접수일 : 2021. 08. 02.  
수정원고 접수일 : 2021. 08. 18.  
게재 결정일 : 2021. 08. 18.

## Proposal of National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Focusing on licensed Psychologist System in U. S.

Yun-Jeong Shin<sup>1</sup> · Ji-Yeon Lee<sup>2</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sup>2</sup>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South Korea

Recently, the Basic Plan for Mental Health and Welfare was announc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ecessity of a national licensure system for professionals who can provide client-oriented mental health services is being highlighted again. The pre-existing national and private mental health related certifications have different standards and evaluation system, so it has not reached an agreement on the basic composition requirements of psychological counseling experts and the standards for evaluating professionalism.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direction of securing the profession identity of counseling profession and to explore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To this end, this study addressed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psychological service legislation study, which was the basis of the Psychological Services Act 1. Specifically, we proposed to establish graduate-level training to ensure the quality of training through establishing standards for educational qualification and a systemic training system, introducing an accreditation system for the graduate training, and collaboration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raining sites. Las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not to imitate foreign models, but this study discussed the necessity to establish the unique identity of counseling to meet the needs of our society in consideration of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and the need for the unique identity to b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currently being discussed.

*Key words* : *Bill for Psychological Service, Psychologist Licensure, Accreditation, qualification management, Psychological Counseling Professionals*